

※ 【 관련 :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-2509(2013.02.01.)】

- 전문대졸 및 4년대졸 학력이 중복되는 경우 4년대졸 학력이 학사 편입이 아닌 실제 2개 대학 6년 이상을 다닌 경우 전문대졸 학력에 대해서는 80% 인정
(동등학위가 아닌 동등 수준으로 판단)
 - ☞ 「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」[별표3]에서 ‘같은 수준의 학교란’, 수업연한, 교육과정,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 한다. 그동안 학사, 전문학사 소지자에게는 ‘동등학위’로 간주하여 1개 외의 학교의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, 「공무원 보수 규정」[별표22]의 ‘비고1’에서 ‘동등학위’가 아닌 ‘같은 수준’의 2개 학위에 대해, 1개 외의 학교의 경력에 80%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부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임

< 학위별 인정 여부표 >

종 전 (12.7.16 이전)				변 경		
A경우	학사	학사	1개 학사외 나머지 80% 인정	학사	학사	“이전 동일”
B경우	학사	전문학사	1개 학사외 나머지 미인정 (동등 학위)	학사	전문학사	1개 학사외 나머지 전문학사 80% 인정 (동등 수준)
C경우	전문학사	전문학사	1개 전문학사외 나머지 80% 인정	전문학사	전문학사	“이전 동일”

2. [비고 3] 학력과 경력의 중복

(비고3)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.

- 학력: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(입학일~졸업일, 휴학기간 제외)을 의미한다.
-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.
 - ※ 1학기 : 3월 1일 ~ 8월 31일, 2학기 : 9월 1일 ~ 2월 28일(말일)
 - ※ 입학일(예시: 3월 4일)과 졸업일(예시 : 2월 14일)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령기간(학력기간)을 계산하며, 경력과 중복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.
 -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,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.
 - ※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(수학기간)으로 본다.

1. 독학사, 학점은행제는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나, 영 별표23에서 학령으로 학령만큼 학력으로 인정한다.
 2. 독학사, 학점은행제의 학력과 경력 중복 기간 계산방법
 - : 학위취득 시점부터 역산하여 인정되는 학령 기간만큼 학력으로 인정하여, 해당 학령 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중 1개만 산입한다.
- ※ 학위취득 시점 : 독학사 학위(2.28. 기준), 학점은행제 학위(2.28. 또는 8.31.기준)